

(공시보고서 표지 - 공통)

주요 경영상황 공시
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제3항에 따라 당사의 주요경영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2021년 9월 15일

금융투자협회 귀중

회 사 명 : 신한자산운용 주식회사
(영문명) Shinhan Asset Management Co., Ltd.
(홈페이지) <http://www.shinhanfund.com>

본 점 소 재 지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(여의도동)
(전 화) 02-767-5777

대 표 이 사 : 이창구

담 당 임 원 : (직 책) 본부장
(성 명) 이성환 (전 화) 02-767-9250

작 성 자 : (직 책) 부장
(성 명) 김남영 (전 화) 02-767-9086

제 출 이 유 : 「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」 제2-59조에 따른 주요 경영상황

※ 본 건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상황 공시는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제3항, 「동법 시행령」 제36조제2항 및 「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」 제2-59조에 따른 『법정공시사항』으로 그 내용에 허위,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49조제1항제15호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	주주명부	시작일	-
	폐쇄기간	종료일	-
	합 병 반 대 의 사 통 지 접 수 기 간	시작일	-
		종료일	-
	주주총회예정일자		2021. 9. 15.
	주 식 매 수 청 구 권 행 사 기 간	시작일	-
		종료일	-
	구주권제출기 간	시작일	2021. 9. 16.
		종료일	2021. 9. 23.
	매매거래 정 지예정기간	시작일	-
		종료일	-
	채 권 자 이 의 제출기간	시작일	2021. 9. 16.
		종료일	2021. 9. 27.
	합병기일		2022. 1. 1.
종료보고 총회일		2022. 1. 3.	
합병등기예정일자		2022. 1. 5.	
신주권교부예정일		-	
11.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	행사요건		-
	매수예정가격		-
	행사절차, 방법, 기간, 장소		-
	지급예정시기, 지급방법		-
	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		-
	계약에 미치는 효력		-
12. 이사회결의일(결정일)		2021. 9. 15.	
- 사외이사참석여부	참석(명)	3	
	불참(명)	-	
- 감사(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) 참 석여부		참 -	
13.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		아니오	
- 계약내용		-	
14.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		아니오	
-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		-	
15.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			
- 8. 합병상대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20. 12. 31.을 기준으로 하되, 합병상대회사가 2021. 6. 25.자 로 유상증자를 진행하여 자산총액 및 납입자본금이 증가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하였음			
- 합병일정은 현재 시점에서의 예상 일정이며,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, 금융위원회의 합병인가 일정 및 기타 제반 상황 변화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			
※ 관련공시		-	

<기재상의 주의>

- 주1) 「상법」 제522조, 제527조의2, 제527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합병에 관한 결정 (이사회결의 또는 대표이사·대표집행임원 등의 결정)이 있을 때 공시한다.
- 주2) “합병방법”은 “A사가 B사를 흡수합병”, “A사와 B사의 신설합병” 등 해당방법을 기재한다.
- 주3) 소규모합병 또는 간이합병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예정일자 등 관련 없는 사항의 기재를 생략한다.
- 주4) “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”는 합병이 회사의 경영, 재무, 영업 등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 및 효과 등을 기재한다.
- 주5) “합병비율”은 흡수합병의 경우 소멸회사주식 1주당 교부할 존속회사주식수를 소수점 이하 7자리까지 기재하고, 신설합병의 경우 소멸회사주식 1주당 교부할 신설회사의 주식수를 소수점 이하 7자리까지 기재한다.
- 주6) “합병비율 산출근거”에는 비율·가액 등을 산출하는 데 사용한 방법, 주요가정, 산출내용, 기준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(기준주가·자산가치·수익가치 등 포함). 또한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2호 가목의 단서 미적용 등 비율 산출과 관련된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상세히 기재한다.
- 주7) “외부평가에 관한 사항”은 외부평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기재하며, 외부평가를 받지 않은 경우 “근거 및 사유”만 기재한다. “외부평가 의견”은 적정여부를 기재하되, 평가결과가 적정이 아닌 경우에는 그 근거를 요약해서 기재한다.
- 주8) “회사명”란은 법인의 한글명을 기재 후 ()에 영문명을 추가 기재한다.
- 주9) “회사와의 관계”란은 최대주주나 그 특수관계인, 주요주주, 계열회사, 기타 등을 기재한다.
- 주10) “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”은 행사요건, 예상가격 등 표에 기재된 주요 사항을 기재한다.
- 주11) “풋옵션등 계약체결여부” 및 “계약내용”에는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와 풋옵션·콜옵션·풋백옵션 등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상대방, 계약일, 계약내용(대상, 행사가격, 행사기간 등) 등을 기재한다.
- 주12) “증권신고서 제출면제의 경우 면제사유”를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한다.
- 주13) “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”은 상기 기재사항과 관련한 사항이거나 상기 기재사항 이외의 사항 중 해당공시와 관련한 이행요건, 부대요건, 제약요건, 옵션사항, 기타 참고사항 등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자세하게 기재한다.